

5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1.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제비율 결정목적 및 유의사항

(1) 목적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원가계산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적정한 정부공사비 책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비 조사금액 작성 기준 등

- 1) 관련규정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결정기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장(예정가격)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2200.04-159-17)"
- 2) 작성절차
 - 설계서 검토 :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검토
 - 비목별 단위당 가격 결정
- 3) 활용자료
 - 표준품셈
 - 토목, 건축공사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기공사 : 지식경제부(대전전기협회)
 - 기계공사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기통신공사 : 지식경제부(한국통신공사)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단가(1월, 9월 발표)
- (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 자재가격 :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 및 시장조사가격
- 실적공사비 : 국토해양부 공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제비율 검토자료

- 1) 국가계약법, 원가계산 작성기준 등 회계 관련 각종 법령
- 2)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험 관련 각종 법령 및 고시 등
- 3)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건설협회 발행 건설업경영분석, 완성공사 원가분석
- 4) 통계청 발행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활동인구연보, 노동부의 고용보험관련 통계 등 근로자 통계자료와 건설협회,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 통계자료 등
- 5) 우리청 발주 계약내역서 등을 조사 분석 검토
- 6)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의 보증보험요율
- 7) 보험개발원의 기술보험요율서등 각종자료

(4)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현황(직접공사비 항목별도)

- 간접노무비
- 경비(10종)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5) 조달청의 예정가격작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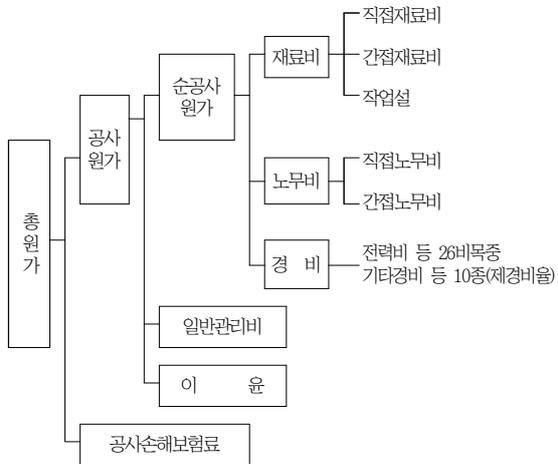
계약요청서접수 → 기술검토(계약방법결정) → 입찰공고 → 조사금액작성(공사원가계산) → 예비가격기초금액(조사금액*0.98)발표(G2B공개) → 예정가격결정(15개 예비가격 중 선정된 4개 평균) → 개찰 → 낙찰예정자선정 → 적격심사 → 낙찰자결정

(6) 제비율의 적용시 입찰자의 유의사항

본 자료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지자체포함)과 공공기관 등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입찰자(투찰자)는 기준표상의 요율에 어떤 구속도 받을 필요 없이(조달청에서G2B에 발표하는 입찰용 공내역서에도 모든 요율은 명기하지 않으며, 또한 그에 따른 1식 금액은 명기하지 않음) 제요율 항목을 임의의 1식 금액으로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면 되며, 다만, 개별법령과 법규 등에 정산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명시하는 각각의 금액에 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을 곱한 금액을 입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공내역서에 요율은 명기하지 않음)하여 계약 후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 조치해야 합니다.

2.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구성체계와 세부항목

(1) 공사원가구성 체계



(2) 공사원가의 구성 비목

- 1) 재료비 :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3) 경비(26종)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입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 4) 일반관리비
- 5) 이윤
- 6) 부가가치세

3. 제비율 적용 대상 항목의 적용기준

(1) 공사의 종류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분류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구분(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하며,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공사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공사규모

공사원가 계산시 적용하는 비목별 공사의 규모(5억 미만~50억 이상의 4단계 구분)와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설계금액-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적용

(3) 공사기간

당해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시에는 설계시 책정된 공사기간을 사용한다.

(4) 직접노무비(직노)

직접노무비는 당해공사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노임의 합계를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시에는 표준품셈에서 단위당 공량을 구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서 해당공 종의 노임을 계산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서에서 최종적인 노무비의 합계를 구하며,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년2회 1월, 9월 발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8조)

(5) 재료비(재)

재료비는 당해공사의 최종 목적물에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의 합계를 말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최종적인 재료비 합계액을 말한다(사급자재비도 당연히 포함됨). 설계시 제경비를 제외하여 원가계산서에 별도 반영한 사급 자재대(비)도 직접공사비의 재료비에 포함하여 제경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도 행안부 회계통칙(재정정책과-403, 2005.1.27)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 사항”에 의해 사급자재비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 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05.12.30)하여 일부재료비에 대하여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방지함 (기준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6) 관급자재비(관급자재)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만을 의미하며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 예정금액에서도 제외됨)로서 도급공사비에는 포함되

지 않으나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14번항 참조)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20번항 참조)시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주요자재비에 대하여 사급자재대(비)라는 명칭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비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급자재대(비)에 대한 제경비는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7) 산출경비(산경)

산출경비는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중 공사원가계산시 비율로서 계상되는 제경비항목을 제외하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 계산하는 직접공사비 중의 경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산출경비로는 중기경비,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 계측비 등을 들 수 있다.

(8) 간접노무비(건축공사는 공사의 유형별로 요율이 세분화 됨)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간접노무비 계산시 공사규모 구분은 산출내역서에서 계상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직접공사비)으로 하고 간접노무비의 계산은 직접노무비에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별 해당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회계예규 “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우리청 발주공사의 외주비를 감안한 원가계산서를 분석한 간접노무비율 등을 참조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결정(기준 제4조, 제5조, 제16조, 제 18조, 제34조)

(9)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사원가계산시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노무비)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재보험료율을 매년도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제2009-84호, ’09.12.30)하고 있다(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범의 적용제외사업) 1항 3호 ‘총공사금액(관급자재비 포함)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음’(기준 제19조 제3항 제10호)

(10)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 제8조, 시행령 제12조, 제69조,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됨. 단, 고용보

협회사행령 제2조(적용범위) 1항 2호 '총공사금액(관급자 제비 포함)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는 적용 하지 않음'(기준 제19조 제3항 제10호)고 용보험료율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다르게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적용 고용보험료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71호(2011.0.10.)로 고시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P1389)으로 공표된 요율을 적용함(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700억원~700억원	1300억원~700억원	600억원~500억원
3	700억원~400억원	700억원~400억원	500억원~400억원
4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5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6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190억원~ 130억원
7	13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주)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 추정금액 : 설계금액+관급자제비(도급자설치)+부가세

고용보험료율의 구성(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 분	부담률(99.1.1 이후)		비고	
	사업주	근로자		
실업급여사업	0.45%	0.45%	적용제외 : 65세 이상 일용근로자 → 비율 98% 직업능력은 대한건설협회 조사통보 자료의 등급별 전체사업체수에 규모별 법정요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등급별업체수로 나누어 산출	
고용안정사업	0.15%	-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
	150인 이상 ~ 우선대상기업	0.3%		-
	150인 이상 ~ 1000인미만	0.5%		-
	1000인 이상	0.7%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14호(2005년 12월 30일)』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건설근로자의 건강증진(질병,부상)의 목적에 총당하는 보험료로서 공사원가계산시는 직접노무비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공사금액에 관계없이 1개월이상의 1건 계약공사에 적용).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상시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기준 제19조 제3항 제1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14호(2005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 고시

(1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등에 의거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에 총당하는 보험료로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직접노무비에 국민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공사금액에 관계없이 1개월이상의 1건 계약공사에 적용).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상시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다.(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18세미만의 자와 6세이상의 자는 제외됨, 국민연금법 제75조 제2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중 사용자부담율은 4.5%이며, 사업자 부담금 4.5%에 상시근로자비율(58.28%) 및 제외감안 비율 곱한 보험율(2.41%)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원가계산의 경비로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에 사회보험의 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반영을 의무화(기준 제11조 제3항 제10호)

(13) 퇴직공제부담비

퇴직공제부담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법 제18조의 2 및 시행령 제23조의 2, 시행규칙 제35조의 3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공제부담비율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준설공사는 중기노무자로 모두 상용근로자이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되며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퇴직공제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적용요율은 대한건설협회의 노임공표에 따라 년2회 조정된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담비가 계약자가 납부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정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정산규정) 퇴직공제부담비의 목적 외 사용 금액 조치(계약특수조건) 퇴직공제부담비의 산출기본식=
 노무비(기본급)×일용노무자비율×공제부담/공사부분평균노임
 = 직접노무비×퇴직공제부담비율(%)
 조사된 퇴직공제부담비율×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이상의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위 안내 내용에 따라 도급금액산

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함(기준 제19조 제3항 제24호)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 26의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0호(‘10. 8. 9)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작업현장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의 1.2배한 금액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시의 공사규모 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를 합하여 규모를 산정하면 된다. 이때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5억원 또는 50억원 정도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와 불포함시에 적용되는 공사규모가 달라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공사에 적용) 고용노동부에서 고시(제2010-10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사종류를 정하여 별표1의 공사종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에 따른 요율을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에 곱하여 산출한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발표하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을 곱한 금액 이상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여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의거 추후 정산하여야 함.(기준 제19조 제3항 제22 호)

(15)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최저가입찰대상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원가계산시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경비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시행령 개정 입법에 고중이며 조만간 통과 예정임)

-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원가반영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입찰 대상공사(개정전 500억원이상)

계상방식 = 조사금액×예상낙찰율×40%(또는 50%)×보증요율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200억)×0.06% + 18.6백만원]×공사기간(년) 공사원가계산시 경비로 반영하는 최종 수수료 산식 토목 및 산업설비공사 :
 -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13%+6.6백만원]×공사(년) (국계약시행령 개정 완료전 적용)
 -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16%+6.6백만원]×공사(년) (국계약시행령 개정 완료후 적용예정)
 (기준 제19조 제3항 제20호)

(1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교부 등)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하도급계 약시 소요되는 지급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적용하는 요율을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원가 계상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경비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기준 제19조 제3항 제20호) 조사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위안내 내용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대통령령 19139호 2005.11.25) 제1항, 제3항에 의거 정산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요율

공사 규모	요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 (부가세 포함)]~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민간공사에 있어서 상기 공사규모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에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17) 기타경비(건축공사는 공사의 유형별로 요율을 세분화)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품셈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7개 비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 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 수수료)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근 거로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및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 성공사원가분석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기타경비율을 결정하며, 공사원가 계산시는 재료비와 노무비(직노+간노)의 합계액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 하고 기타경비 계산시 공사규모 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 무비 그리고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규모를 적용 한다. (기준 제 5 조, 제 19 조 제 3 항)

(18) 환경보전비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별표 15(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표준품셈 등 원가 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 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즉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 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만이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임),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 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 7. 1개정) 단, 내역 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 기술 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 된 42개 시설)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지 않음. 환경보전비의 공사원가 계산시 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산출경비의 합계액에 환 경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내역서에 명시하여 반영 할 때는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 검사비, 교육훈련비, 흥 보물제작비 등 환경 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된 환경보전비 합계 액의 12%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 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 주자에 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 의 사용실적 에 따라 정산하여야하므로 투찰자는 예비가 격기초금액 발표 시 발표하는 환경보전비(내역서에 각 항 목별로 명시하여 직 접공사비로 반영한 공사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비 없음)에 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을 곱한 금액 이상을 입찰 내역서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하여 야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 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는 그 내용을 확 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기준 제 19 조, 제 3 항 제 21 호)

(19) 일반관리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 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을 말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근거로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및 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경영분 석, 완성공 사원가분석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일반관리비율을 결정하며 회계 예규상 일반관리비의 비율 은 100분의 6을 초 과하지 못함. 공사원가 계산시는 재료 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산출경비, 각종 보험료, 기타경비 등 포함)의 합계액(순공사원가)에 일반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기준 제12조, 제13조, 제20 조)

일반관리비 관련 유권해석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의 일반관리비는 제 2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을 축소 적용 가능 (질의회신 회제41301-353 '03. 3. 29)

(20)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청 집행 시설공사 의 계약 내역서를 분석한 이윤율과 준칙상의 요율 등을 비교 하여 산정한 요율로 공사 원가 계산시에는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산출경비, 각종보험료, 기 타경비 등 포함) 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재료비는 이윤의 대상에서 제외됨)(기준 제21조)

이윤 관련 유권해석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의 예정가격 작성기 준상의 이윤율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 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 하여 동 비율을 축소 적용 가능(질의회신 회제 41301-353'03.3.29)

(21)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공사 손해보험 가입 업무집행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 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시는 재 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관급자재대(부가가 치세 제외)의 합계액에 공사손해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공사손해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의 공사물간별 기본 요율과 제3 자 배상책임 요율을 이용하여 공사손해보험요 율 산출 기준서를 작성하여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 며,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이 없는 공사의 요율은 보험 감독원과 보험회사에 요율의 견적을 의뢰하여 구득한 요 율에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기준 제22조) (불임 조달청 손해보험 건설공사별 기본 요율표)

(2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공사에는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포 함)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공사원가 계산 시 부가가치세 적용은 당해공사가 영세율(부가세 0%, 예 : 도 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또는 면세율(매입세의 10%, 예 : 국민주택의 공급공사 등) 대상공 사인지 등을 검토 하여 반영한다.

2014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 토목공사 (조달청 2014. 9. 15 시행)

(단위 : %)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 고용보험료 (노)×율	건강 연금보험료 (직노)×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재+직노+산경)×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 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직노)×율					
		토목	조경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9	10.5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1등급 : 1.39 ·2등급 : 1.17 ·3등급 : 0.97 ·4등급 : 0.92 ·5등급 : 0.89 ·6등급 : 0.88 ·7등급 : 0.87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2013.6.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전문건설업] ·0.56 : ·0.56 : ·0.49 : ·0.39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0.11 : 그외	5억 미만 ·일반건설-갑 : 2.39, 을 : 3.09 ·특수 및 기타 : 1.85 ·철도·궤도 : 2.45 ·중건설 : 3.43
	7-12개월 (365일)	10.3	9.9				
	13-36개월 (1095일)	9.7	9.3				
	36개월이상 (1096일)	10.4	10.0				
50억-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0	9.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율) 6.55	5억-50억 ·일반건설 -갑 : 1.86+5,349천원 -을 : 1.99+5,499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 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중건설 : 2.35+5,400천원	
	7-12개월 (365일)	9.4	9.0				
	13-36개월 (1095일)	8.8	8.4				
	36개월이상 (1096일)	9.5	9.1				
300억-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9.5	9.1	퇴직공제 부금비	(적노)×율 (2.3)	50억 이상 ·일반건설-갑 : 1.97 을 :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궤도 : 1.55 ·중건설 : 2.44	
	7-12개월 (365일)	8.9	8.5				
	13-36개월 (1095일)	8.4	8.0				
	36개월이상 (1096일)	9.1	8.7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9.6	9.2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2013.6.26.공고)	(적노)×율 (2.3)	50억 이상 ·일반건설-갑 : 1.97 을 : 2.10 ·특수 및 기타 : 1.27 ·철도·궤도 : 1.55 ·중건설 : 2.44	
	7-12개월 (365일)	9.0	8.6				
	13-36개월 (1095일)	8.5	8.1				
	36개월이상 (1096일)	9.2	8.8				

공사 규모	공사 기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노+경+일)×율				
		(재+직노+산경)×율		(재+노)×율		(재+노+경)×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간척, 준설) - 오타·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 경우 ·0.8 : 항만 (간척, 준설) - 오타·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댐 ·0.6 : 택지개발 ·0.7 : 주택 (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 (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 (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3 6.3 6.4	6.2 6.2 6.3 6.3	50억 미만 : 6.0	5억 미만 : 6.0	50억 미만 : 5.0					
	7-12개월 (365일)							6.3	6.3	5~30억 미만 : 5.5	5~30억 미만 : 5.5	50~300억 미만 : 12.0
	13-36개월 (1095일)							6.3	6.3	300~1000억 미만 : 4.8	30~100억 미만 : 4.7	300~1000억 미만 : 10.0
	36개월이상 (1096일)							6.3	6.2	1000억이상 : 4.3	100억 이상 : 4.3	1000억이상 : 9.0
50억-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간척, 준설) - 오타·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 경우 ·0.8 : 항만 (간척, 준설) - 오타·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댐 ·0.6 : 택지개발 ·0.7 : 주택 (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 (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 (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3 6.3 6.4	6.2 6.2 6.3 6.3	50억 미만 : 6.0	5억 미만 : 6.0	50억 미만 : 5.0					
	7-12개월 (365일)							6.3	6.3	5~30억 미만 : 5.5	5~30억 미만 : 5.5	50~300억 미만 : 12.0
	13-36개월 (1095일)							6.3	6.3	300~1000억 미만 : 4.8	30~100억 미만 : 4.7	300~1000억 미만 : 10.0
	36개월이상 (1096일)							6.3	6.2	1000억이상 : 4.3	100억 이상 : 4.3	1000억이상 : 9.0
300억-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간척, 준설) - 오타·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 경우 ·0.8 : 항만 (간척, 준설) - 오타·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댐 ·0.6 : 택지개발 ·0.7 : 주택 (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 (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 (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3 6.3 6.4	6.2 6.2 6.3 6.3	50억 미만 : 6.0	5억 미만 : 6.0	50억 미만 : 5.0					
	7-12개월 (365일)							6.3	6.3	5~30억 미만 : 5.5	5~30억 미만 : 5.5	50~300억 미만 : 12.0
	13-36개월 (1095일)							6.3	6.3	300~1000억 미만 : 4.8	30~100억 미만 : 4.7	300~1000억 미만 : 10.0
	36개월이상 (1096일)							6.3	6.2	1000억이상 : 4.3	100억 이상 : 4.3	1000억이상 : 9.0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1.8 : 항만 (간척, 준설) - 오타·준설토방지막 설치하는 경우 ·0.8 : 항만 (간척, 준설) - 오타·준설토방지막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 댐 ·0.6 : 택지개발 ·0.7 : 주택 (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 (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0.8 : 기타토목 (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3 6.3 6.4	6.2 6.2 6.3 6.3	50억 미만 : 6.0	5억 미만 : 6.0	50억 미만 : 5.0					
	7-12개월 (365일)							6.3	6.3	5~30억 미만 : 5.5	5~30억 미만 : 5.5	50~300억 미만 : 12.0
	13-36개월 (1095일)							6.3	6.3	300~1000억 미만 : 4.8	30~100억 미만 : 4.7	300~1000억 미만 : 10.0
	36개월이상 (1096일)							6.3	6.2	1000억이상 : 4.3	100억 이상 : 4.3	1000억이상 : 9.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250억원(직접공사비)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
 - 250억원(직접공사비)이상-500억원(직접공사비)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
 - 500억원(직접공사비)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 미만 :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 0.080%, 100억원-300억원 미만 : 0.075%,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건축 : 0.068%, 토목 및 산업설비 : 0.0071%, 터기·대안공사 : 0.84%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고시 (국토부고시제2013-808호, 2013.12.20.)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9.02.12 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 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5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2-126호(2013.10.14)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건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를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산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건설 : 철도·궤도건설(기설로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승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이상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부 고시 제2013-738호)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 1등급 : 1300억이상, 2등급 : 1300억~700억이상
 - 3등급 : 700억~400억이상, 4등급 : 400억~270억이상
 - 5등급 : 270억~190억이상, 6등급 : 190억~130억이상
 - 7등급 : 130억~87억이상
 - ※ 국토부 보험율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역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과금,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2.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조달청 2014. 9. 15 시행)

(단위 : %)

공 사 구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 고용보험료 (노)×율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율	퇴직공제 부 급 비 (직노)×율
		(직노)×율		(재+노)×율				
		건축	산업설비	건축	산업설비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1	10.8	5.1	5.9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1등급 : 1.39 ·2등급 : 1.17 ·3등급 : 0.97 ·4등급 : 0.92 ·5등급 : 0.89 ·6등급 : 0.88 ·7등급 : 0.87 (추정금액 기준)은 *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3-64호, 2013.12.26.)"참고	·0.9 : 도로(교량,터널,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오탁,준설도, 방지막설치필요시,간척,준설) ·0.8 : 항만 (방지막불필요시,간척,준설) ·1.1 : 댐 ·0.6 : 택지개발 ·0.8 : 기타토목(하천등)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7-12개월 (365일)	8.4	10.2	5.3	6.6			
	13-36개월 (1095일)	7.7	9.6	6.2	6.2			
	36개월이상 (1096일)	7.5	9.3	6.5	6.7			
50억-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9	9.6	6.0	5.9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1등급 : 1.39 ·2등급 : 1.17 ·3등급 : 0.97 ·4등급 : 0.92 ·5등급 : 0.89 ·6등급 : 0.88 ·7등급 : 0.87 (추정금액 기준)은 *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3-64호, 2013.12.26.)"참고	·0.9 : 도로(교량,터널,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오탁,준설도, 방지막설치필요시,간척,준설) ·0.8 : 항만 (방지막불필요시,간척,준설) ·1.1 : 댐 ·0.6 : 택지개발 ·0.8 : 기타토목(하천등)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7-12개월 (365일)	7.3	9.1	6.2	6.6			
	13-36개월 (1095일)	6.6	8.5	7.1	6.2			
	36개월이상 (1096일)	6.4	8.1	7.4	6.7			
300억-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7	9.5	6.0	4.6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1등급 : 1.39 ·2등급 : 1.17 ·3등급 : 0.97 ·4등급 : 0.92 ·5등급 : 0.89 ·6등급 : 0.88 ·7등급 : 0.87 (추정금액 기준)은 *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3-64호, 2013.12.26.)"참고	·0.9 : 도로(교량,터널,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오탁,준설도, 방지막설치필요시,간척,준설) ·0.8 : 항만 (방지막불필요시,간척,준설) ·1.1 : 댐 ·0.6 : 택지개발 ·0.8 : 기타토목(하천등)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7-12개월 (365일)	7.1	9.0	6.2	5.3			
	13-36개월 (1095일)	6.4	8.4	7.0	4.9			
	36개월이상 (1096일)	6.1	8.0	7.3	5.4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7.7	9.4	5.9	4.1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1등급 : 1.39 ·2등급 : 1.17 ·3등급 : 0.97 ·4등급 : 0.92 ·5등급 : 0.89 ·6등급 : 0.88 ·7등급 : 0.87 (추정금액 기준)은 *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 2013-64호, 2013.12.26.)"참고	·0.9 : 도로(교량,터널,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 (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오탁,준설도, 방지막설치필요시,간척,준설) ·0.8 : 항만 (방지막불필요시,간척,준설) ·1.1 : 댐 ·0.6 : 택지개발 ·0.8 : 기타토목(하천등)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 외 건축 ·0.3 : 조경, 기타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7-12개월 (365일)	7.0	8.9	6.1	4.8			
	13-36개월 (1095일)	6.3	8.3	7.0	4.4			
	36개월이상 (1096일)	6.1	7.9	7.3	4.9			

공 사 구	공사 기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건강,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재+노+경)×율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5억 미만		50억 미만 : 6.0		[건강] : 1.7 [연금] : 2.49	50억 미만 : 15.0	6.55
	7-12개월 (365일)	·일반건설-갑 : 2.93 을 : 3.09 ·중건설 : 3.43 ·철도·궤도 : 2.45 ·특수 및 기타 : 1.85		50~300억미만 : 5.5				
	13-36개월 (1095일)			300~1000억미만 : 4.8				
	36개월이상 (1096일)			1000억이상 : 4.3				
50억-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5억~50억 미만		50억 미만 : 6.0		[건강] : 1.7 [연금] : 2.49	50억 미만 : 15.0	6.55
	7-12개월 (365일)	·일반건설 -갑 : 1.86+5,349천원 -을 : 1.99+5,499천원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13-36개월 (1095일)	·중건설 : 2.35+5,400천원 ·철도·궤도 :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50~300억 미 만 : 12.0				
	36개월이상 (1096일)	50억 이상		300~1000억 미만 : 1.0				
300억-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일반건설-갑 : 1.97 을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 1.27		5~30억미만 : 5.5		[건강] : 1.7 [연금] : 2.49	50억 미만 : 15.0	6.55
	7-12개월 (365일)			1000억 이상 : 9.0				
	13-36개월 (1095일)			30~100억미만 : 4.8				
	36개월이상 (1096일)			1000억이상 : 4.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일반건설-갑 : 1.97 을 : 2.10 ·중건설 : 2.44 ·철도·궤도 : 1.66 ·특수 및 기타 : 1.27		30~100억미만 : 4.8		[건강] : 1.7 [연금] : 2.49	50억 미만 : 15.0	6.55
	7-12개월 (365일)			1000억이상 : 4.3				
	13-36개월 (1095일)							
	36개월이상 (1096일)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대상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 일반건설(갑) : 건축공사, 도로시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개설로 면에 레이아웃 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석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시설 :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교차교·승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퇴직공제부급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 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영양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법)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최저가, 기술제안 대형공사)
 - 250억원(직접공사비)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
 - 250억원(직접공사비)이상-500억원(직접공사비)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
 - 500억원(직접공사비)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전기(대안)공사 : 0.084%
 -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기준)
 - (단위 : 미만·이상)
 -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 7등급 : 120억~87억원
 -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율, ()은 2000.7.31.이전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조
 -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 86.75%(83%)
 -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 85.5%(80%)